

의안
번호

384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0. 19.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84호

다. 제출일자 : 2021. 10. 05.

라. 회부일자 : 2021. 10. 08.

2. 제안이유

-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고자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북마을관리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 위탁 시설명 : 성북마을관리소
- 위 치 : 성북구 정릉로38라길 32(정릉동)
- 규 모 : 지상1층(연면적 36㎡) 모든 시설물과 장비

나.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1년)

다. 위탁사무 : 성북마을관리소 관리·운영

-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
-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 대여
-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치 서비스 제공
-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

라.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 법인 적격 심사 후 선정(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권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마을관리소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성북마을관리소는 어르신 낙상예방과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임.
- 민간위탁하려는 ‘성북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과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
 2.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 대여
 3.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제공
 4.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 교육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현황〉

소재지	시설규모	연간사업비	위탁기간	운영 조직	비 고
성북구 정릉로 38라길 32	지상1층 연면적 36㎡	131,528천원 (구비)	2022.01.03. ~ 2022.12.31. (1년)	2명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2021년 3월 SH공사와 무상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2021년 8월 리모델링 준공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북마을관리소 관리 운영 사무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개조 등 종합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써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
- 따라서,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3호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함으로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검토의견

- 본 위탁 동의안은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는 전체가구 중 노인 가구가 거주하는 노후주택 비율은 59.7%¹⁾이르고, 고령자 안전사고 중 721%는 주택 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낙상은 사망에 이르는 두 번째 요인²⁾임을 감안할 때 성북마을관리소 운영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운영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출처: 서울시 & 2018년 주택산업연구원>

2) 2016년, 한국소비자원